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의안번호 18606)
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계약으로
매입한 국·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할 경
우,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 명확화(안 제16조제7항 신설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·공유재산을 수
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,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(외국인투자기업
에 한함)에게 제공할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
조제1항제9호(부당지원행위의 금지) 및 제47조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
한 이익제공 등 금지)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토록 명확화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·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,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(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)에게 제공할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9호(부당지원행위의 금지) 및 제47조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 ·대부료 감면 등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 ·대부료 감면 등) ① ~ ⑥ (현 행과 같음) <u>⑦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국유·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,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(외국 인투자기업에 한함)에게 제공할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9호 (부당지원행위의 금지) 및 제47 조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의 의무를 토 지매매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.</u> <u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u>
<u>⑦</u> (생 략)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	
연 락 처	(044) 203 - 4614